

# 模範 自衛消防隊를 찾아서

— 聖 母 病 院 編 —

서울을 비롯한釜山·大邱등지에 있는 4층 以上の 特殊建物數는 총 5,824件(5月末 現在當協會集計)에 이르고 있어 全國 都市의 高層建物數는 상당 數에 달 할 것으로 내다 보인다.

이러한 高層建物は 하나의 都市 構造를 形成하는 主體가 되고 있으며 官廳이나 各種 事務所로 꾸며져 國民의 生活形態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아니될 存在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빌딩」들은 저나름대로의 火災要因을 안고 있게 마련이며 또 이러한 요인들은 예고없이 나타나 우리의 貴重한 生命과 財産을 앗아가 버린다.

여기 模範的으로 防火管理를 하고 있는 高層建物を 찾아 그 豫防對策을 들어보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建物の 防火管理和 比較, 그 改善策을 찾아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서울中區明洞 所在 明洞聖堂에 자리잡은 聖母病院은 醫療機關이라는 特殊한 建物形態임에도 불구하고 消防活動이나 그 管理狀態가 잘 되어 있는 代表的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1961年 12月 1日 延建坪 4,636.6坪에 地下 2層, 地上 7層의 이 「메머드」 建物에 대한 防火管理는 病苦속에 생의 길잡이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人員을 受容하는 病棟建物이라는 데서 一般 建物과는 그 管理 形態가 크게 相異하다.

이러한 聖母病院에 自衛消防隊가 設置된 것은 1968年 12月 1日. 聖母病院은 自衛消防隊의 設置를 계기로 이들의 철저한 訓練과 運營의 妙를 통해 效率的인 防火體制를 이룩하고 있다.

自衛消防隊의 機構를 보면 이 機構의 원활한 運營을 위한 最高機關으로 防火對策委員會를 두어 ① 消防計劃의 審議, ② 防火管理에 관한 諸 規程의 制定 ③ 消防用 設備의 改善 強化 ④ 職員에 대한 防火管理上의 賞罰審査 ⑤ 기타 防火管理에 관한 근본대책의 調查·研究·企劃 등을 관장케 하고 있다.

自衛消防隊의 組織은 最高責任者인 院長 밑에 各單位機關長이 消防隊長이 되고 各單位機關別

主務處長이나 部長을 組長으로한 豫防組와 消防組를 두고 있는데 豫防組 밑에는 火氣施設檢査班 등 9個班, 消防組 밑에는 通信班 등 8個班(別表참조)을 두고 있으며 訓練組를 별도로 두어 전 隊員의 訓練을 담당케 하고 있다.

自衛消防隊의 隊員은 每月 15日 「防空·消防의 날」 行事에 動員되어 각종 訓練 및 消火器使用法, 脫出法 등 실제에 준한 完備한 훈련을 통해 비상시를 대비하고 있다.

특히 자위소방대는 비상훈련의 하나로 防火·管理 責任者인 自衛消防隊長이 不時에 火災警報 「카드」를 不特定 地域에 붙여 火災發生 信號를 하면 5分內에 全隊員이 鎮火作業에 臨할 수 있는 態勢를 갖추는 訓練을 수시 실시하고 있다.

이때의 警報 「카드」는 「重火災」·「小火災」 등 2가지로 區分되는데 重火災는 全建物에 火災, 小火災는 部分的인 火災로 區分하여 그 動員 및 訓練에서 약간의 差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訓練들은 病院이라는 特異性 때문에 환자들이 동요되지 않게 조용히 進行되는데 假想환자를 만들어 실제 避難 및 救助方法을 실습하고 모든 火災가 초기에 鎮壓될 수 있도록 모의

火災를 發生시켜 消火器로 鎮壓하는 訓練을 檢하고 있다.

또한 非常時를 대비 全天候救助袋 및 救助袋 使用法, 철제 사다리 타기, 避難 사다리 設置方法, 防火砂 등 모든 防火器具 사용을 직접 실습을 통해 터득케 함으로써 待避時에 萬全을 期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이러한 訓練의 熱誠度를 가지고 職員의 勤務評定의 基準으로 삼기도 하고 있으며 看護補助員들은 별도로 月 2회씩 1~2時間의 講義와 實習을 실시, 防火管理교육의 성적으로 昇進基準을 삼기도 하는데 看護補助員들은 이러한 教育의 열성이 대단하여 스스로 教育과 實習을 요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自衛消防隊의 豫防組員은 그 大部分이 室責任者와 警備員(守衛)들로 構成되어 있는데 이들은 每時間 各層別로 點檢, Check list를 作成하여 지적된 事項을 即刻 處理함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들에게는 改·補修에 대한 命令權이 주어져 있어 管理에 能率化를 期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시로 火器인 분화「스토브」, 화로, 전열기, 기타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들이나 自衛消防隊長에게 許可를 得하여야 하도록 되는 등 器具使用의 철저화를 기하고 있다.

警備員들로 構成된 豫防組員들이 每時間別 巡察에서 Check 하는 事項은 「냄새」에 力點을 두는바 이는 病院이라는 특이성 뿐 아니라 火災의 初期發見이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냄새가 조금만 나도 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쓰레기장 담배재떨이 등에서의 불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各室은 그 部署의 責任者가 點檢日誌를 隨時

作成, 그 狀況을 點檢하고 지적 事項은 물론 是正이 要求되는 設備에 대해서는 管理責任部署에 報告하여 즉각 조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의 訓練과 管理面에서 聖母病院은 全職員이 消防活動을 生活化함으로써 火魔로부터 人命과 財産을 보호하는 데 스스로 앞장서고 있음을 엿보여 주고 있다.

여기 聖母病院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消防裝備現況과 防火管理規程 그리고 각종 Check list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각종 消防裝備 現況

- |           |                     |
|-----------|---------------------|
| 1. 泡沫消火器  | 24個                 |
| 2. 粉沫消火器  | 15坪 17個             |
|           | 10坪 52個             |
|           | Co <sub>2</sub> 18個 |
| 3. 室內消火栓  | 26個                 |
| 4. 救助袋    | 7個                  |
| 5. 避難사다리  | 2個                  |
| 6. 全天候救助袋 | 1個                  |
| 7. 鐵材사다리  | 5個                  |
| 8. 防火수통   | 12個                 |
| 9. 防火바게스  | 15個                 |
| 10. 防火砂   | 99個                 |

■ 방화 관리 규정

제 1 장 총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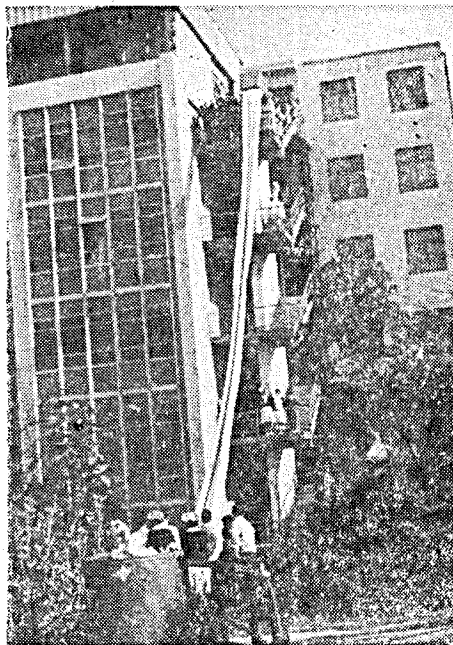
제 1 조 본 규정은 가톨릭중앙의료원 (이하 본원이라 약칭함)에서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경감하는데 있다.

제 2 조 본원의 방화관리기구로서 방화대책 위원회와 자위소방대를 둔다.

제 2 장 기 구 1 (방화대책위원회)

제 3 조 방화관리에 대한 최고 자문기관으로서 방화대책위원회를 둔다.

제 4 조 방화대책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자위소방대장과 방화관리에 필요한 각 부문의 책임자



등 약간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 5조 방화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소방계획의 심의
- 2) 방화관리에 관한 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 3) 소방용 설비의 개선 강화
- 4) 직원에 대한 방화 관리상의 상벌 심사
- 5) 기타 방화관리에 관한 근본 대책의 조사, 연구, 기획

제 6조 방화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긴급회의로 구분한다.

- 1) 정기 회의는 연 2회(4월과 10월)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긴급회의는 방화관리상 긴급 또는 중요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 제 3장 기구 (자위소방대)

제 7조 화재예방의 철저를 기하고 화재 또는 기타 재해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를 최소한으로 막기 위하여 직접 행동기관으로서 자위소방대를 둔다.

제 8조 자위소방대 대장은 각 단위기관장이 되며 예방관리와 소방관리별로 대원을 지휘 통솔한다.

제 9조 자위 소방대의 편성 및 임무는 별지와 같다.

### 제 4장 방화 관리

제 10조 자위소방대의 예방조 각 반원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예방상의 자체 검사와 소방용 설비의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 11조 전조에 의한 자체 감사와 소방용 설비의 점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 1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 검사 결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소방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점검 검사결과를 관계 대장에게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 13조 구내에서 수시로 화기(분화, 스토브, 화로, 열기, 기타)를 사용하고저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4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을 때는 화가 사용자는 소화기구등의 시설등을 하고 소화 기구 등 시설물의 사용상 주의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제 15조 구내외의 건축물(가설 포함)을 건축하고저 할 때 또는 위험물의 반출입 혹은 위험물 관계 시설, 천기시설, 화기사용 시설등의 이전, 개수를 하고저 할 때는 소방대장에게 사전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 16조 소방대장은 구내 전반에 경보장치를 하고 조직에 의한 대원으로 하여금 화재를 경보하며 가청 구역 이외에는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경보내용을 전달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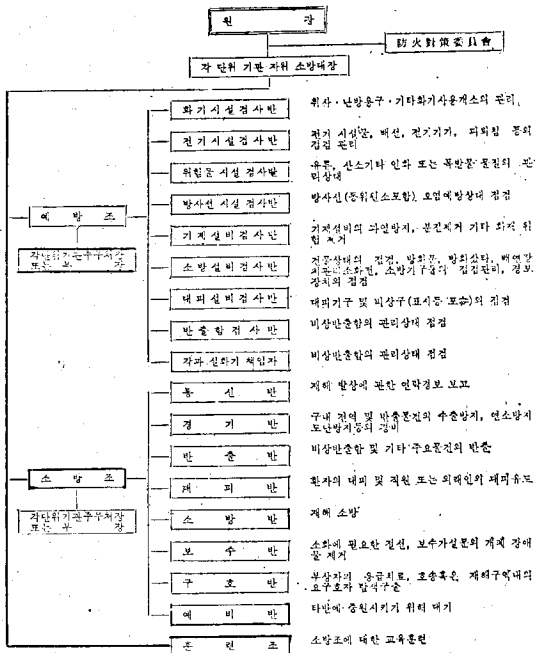
제 17조 경보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정보경보...구내 방송을 통하여 경보사항을 발표하며 방송 가청 구역 이외에는 전화, 구전의 방법으로 연락한다.
- 2) 비상경보...구내방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화 확성기 구전의 방법으로 경보사항을 연락한다.

제 18조 경보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예 보...구내외에 재해의 우려가 있을 때와 원외 인접지역의 기발화재가 본원에 영향될 염려가 있을 때에 화재 예상구역 또는 소방대원 동원준비 사항등을 발표하는 경보이다.
- 2) 비상경보...본원에 직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화재구역, 화재종류 및 소방대원 동원내용(인원, 장소, 기타)을 발표하여 이때에 하명된 소방대원은 즉시 소방작업에 착수하고 원내 전반은 과업을 중지하고 다음 지시 사항에 주의를 경주한다.

防火管理機關基本組織圖 (表1)



(表 3)

日 時 間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1	2	3	4	5	6	7	8
1																								
2																								
3																								
4																								

3) 화재통보...화재우려 사유가 해소 되었거나 또는 기발화재의 소방이 완료되었음을 발표하며 소방대장의 별도지시가 없는한 정상과업에 복귀한다.

제19조 화재 경보 발령중이거나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서, 화재발생의 위험 또는 인명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는 소방대장은 그 취지를 구내 전반에 전달하고 화기사용등의 중지 또는 위험한 장소의 출입을 금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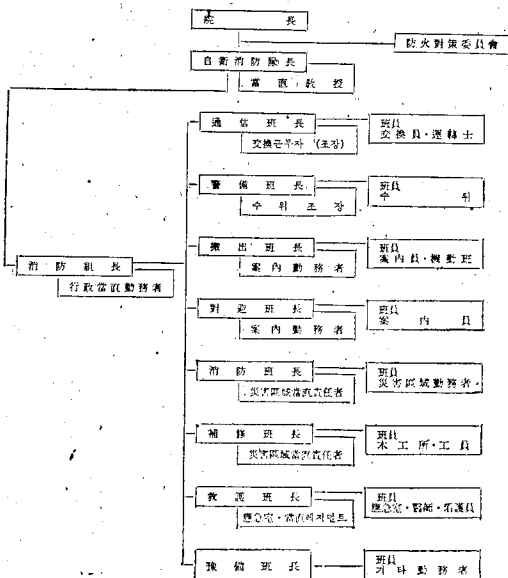
제 5장 교육 훈련

제20조 방화관리의 완벽을 기하고 유사시의 피해를 최소화도로 격감시키기 위하여 방화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제21조 교육 및 훈련 계획은 소방대장이 수립하여 방화대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행한다.

제22조 교육 훈련의 시기와 내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훈련은 기본훈련과 층 훈련으로 구분하며

防火管理機構非常組織表 (表 2)



班員 非常勤務員에 해당이 공통되는 대로 경상 표적으로 복귀한다.

방화관리일지

연월일요일	장점주인	기	사	소방장(소방장)소방장(소방장)소방장(소방장)	
				장	점
(표 4)					
전용 및 시설물					
화기 시설					
전기 시설					
위험물 시설					
방사선 시설					
기계 시설 비					
소방 시설 비					
대피 시설 비					
경보 시설 비					
반송함					
특기사항					

기본 훈련은 계획된 예정하에 소화, 통보, 대피, 기타 일반사항은 월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총 훈련은 예고없이 야간 또는 휴일에 동원, 전반에 관한 사항은 연 2회 이상 방화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소방대장은 소방관서와 연락을 긴밀히 하여 보다 효과적인 방화관리를 기하도록 노력한다.

- 1) 소방 계획서의 제출
- 2) 방화 검열의 요청
- 3) 교육 훈련지도의 요청
- 4)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6 장 상 별

제24조 직원중 방화관리 또는 소방 활동에 현저한 공

로를 세운자는 방화대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표창한다.

제25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또는 하명 사항에 대하여 태만하거나 본원의 재산 또는 인명에 위험을 초래케 하였을 때는 방화대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처벌할 수 있다.

제 7 장 적용 범위

제26조 본 규정은 본원 상용 출입자(공립실업사, 화원 및 시체실 종업원 등)에게도 적용한다.

제27조 본 원의 기타 재해에도 본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68년 12월 1일로 발효한다.

## 特殊建物の 安全點檢과 保險加入에 관하여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서울·釜山·大邱에 所在하는 4層以上の 建物, 國有 建物, 學校, 私設講習所, 病院, 호텔, 公演場, 映畫·TV·放送施設場, 屋內販賣場, 市場, 遊興場, 共同住宅等 「特殊建物」은 法律 第2482號 “火災로 인한 災害補償과 保險加入에 관한 法律”에 의해 韓國火災保險協會가 無料로 實施하는 防火 安全點檢을 받드시 받고 損害保險共同事務所를 통해 身體損害賠償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하여야 합니다. 法定期日是 6月末日입니다.

아직 點檢을 받지 않았거나 保險에 加入하지 않은 特殊建物所有主 여러분은 罰金의 負擔 또는 不利益이 생기지 않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社團 韓國火災保險協會  
法人

서울特別市 中區 草洞 21~9 (自保빌딩 12층)

電話· 서울 ㉠ 4106~4110, ㉡ 4128~4129

釜山支部 ㉢ 8953

大邱出張所 ㉣ 2700, ㉤ 5568

損 害 保 險 共 同 事 務 所

서울특별시 中區 草洞 21~9

電話· 서울 ㉥ 1695, ㉦ 0082~0085

釜山支部 ㉧ 4397 ㉨ 7634

大邱支部 ㉩ 4845

